

『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, 명칭, 운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(안 제2조, 제2조의2, 제2조의3)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및 운영 사항과,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하여,
- 사무의 관리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